

모바일 자금관리(법인) 이용 계약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PC기반의 하나은행 자금관리서비스의 부가서비스인 모바일 자금관리 서비스(이하 “모바일”)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MS”란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는 ‘자금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 업무(통합계좌조회, 이체, 보고서, 전자결제, 수출입), 부가서비스(프랜차이즈, 펌뱅킹, 모바일 등), 기업 ERP와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모바일”이란 이용자가 PC에서 “CMS”를 통해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기업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사”라 함은 “모바일”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②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 절차)

- ① 본 계약서는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동의를 하여 서비스 신청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은행”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하며, 이용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준에 따릅니다.
- ③ “모바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CMS”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 내부의 전산서버와 인터넷 등 전산 환경의 보안수준이 서비스 이용에 적합하도록 “은행”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모바일”은 “CMS”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 : 전 은행 계좌 잔액조회, 전 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2. 카드 : 전 카드사 카드 승인내역, 사용내역, 청구내역, 한도조회
3. 보고서 : 시재보고서, 입출금계좌 내역표, 전일마감잔액표, 잔액변동조회표, 카드청구대금, 카드사용내역분석 등

제 5 조 (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② 본 계약서에서 정한 “모바일”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용수수료를 변경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 앞 서면통지 또는 인터넷 고지에 의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용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관리)

- ① “회사”가 “CMS”에서 조회하는 전은행 계좌 내역, 전 카드사 카드이용 내역, 보고서 등의 데이터를 회사 사무실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를 “은행”의 전산시스템 내 DB에 Cloud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 ② “모바일”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의 전산시스템 내 DB에 저장한 데이터는 “회사”에게 추가적인 서비스(“회사”의 재무관리 수준 reporting, “회사”의 재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상품 안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모바일”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시간)

“모바일”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관련되는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서의 변경)

“은행”은 이 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제 9 조 (서비스 중지)

“은행”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게 사전 통보 후 “모바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 2. “회사”가 “CMS”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 내부 서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 (손해배상)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 11 조 (면책사항)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 2. “회사”가 “CM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 내부의 서버 관리와 보안에 소홀히 하여 서버에 바이러스 침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3. “회사”가 “모바일”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 12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준용규정)

-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한 “모바일”과 관련하여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당해 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 공동망 업무 규약을 준용합니다.

년 월 일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회사”]

[“은행”]

(법인인감)

